

‘육아지원연구’ 투고 논문 심사 규정

제 1 조 (목적)

본 심사 규정은 ‘육아지원연구’에 게재하고자 투고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심사기준)

투고된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의 적절성
2. 연구 내용의 독창성
3. 논지의 일관성
4. 문헌 분석 및 인용의 충실성
5. 연구 방법의 적합성
6. 결과 및 결론 진술의 타당성
7. 학문적 기여도
8. 체제 및 형식의 적절성

제 3 조 (심사절차)

투고 논문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투고규정 준수여부, 학술지 및 학회 발표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심사의뢰 여부를 결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심사위원(논문 1편당 심사위원 4인: 논문 심사위원 3인, 초록 심사위원 1인)을 위촉한다.
3.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심사의뢰 공문, 투고 논문, 투고 논문 심사서를 발송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기준과 판정기준에 의거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심사결과를 학회에 보고한다.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논문의 심사는 접수 후 7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구분하여 투고자에게 심사내용을 통보하며,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7. 심사결과 수정이 필요한 논문의 경우에는 지시된 내용에 따라 수정된 원고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도록 통보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 원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8. ‘수정 후 재심사’ (편집위원회 결정)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 후, 1차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심사자 1인에게 심사를 위촉한다. ‘수정 후 재심사’ (심사위원 결정)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철저한 수정을 거쳐 재투고한 뒤 심사위원 3인의 재심사를 통해 게재 가능한 판정을 받을 경우 다음 호에 게재한다.
9.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모든 저자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게재가 확정된(또는 게재된) 논문의 자료 또는 연구결과의 허위생성 및 조작, 연구내용의 표절, 연구물의 중복 게재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또는 학회지에서 삭제) 처리하며, 이를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소속기관에 알린다.

제 4 조 (판정기준)

1. 투고 논문의 판정기준(논문 심사위원 3인에 해당)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편집위원회 결정)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심사위원 결정)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게재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투고 논문의 초록 판정기준(초록 심사위원 1인에 해당)은 ‘그대로 게재(Accept as it is)’, ‘수정 후 게재(Accept with minor revision / Accept with major revision)’, ‘수정 후 재심사(Revise and resubmit)’의 4가지로 나눈다.